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83

발의연월일: 2021. 6. 8.

발 의 자:전주혜·정운천·강대식

김기현 • 이채익 • 태영호

조명희 · 성일종 · 허은아

김예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시행령에서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중 배기량 1천 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해당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 기 위하여 유류를 구입할 경우 해당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일부 또는 전액을 연간 2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최근 환경오염 예방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고려하면 2021년 말로 일몰이 예정된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환급특례는 앞으로도 계속 지원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최근 악화된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현행 20만원인 환급 한도액을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성도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를 2 024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시행령의 연간 환급 한도액을 20만원으

로 하는 규정을 법률로 명문화함과 동시에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이를 5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1항 및 제3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 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급은"을 "환 급은 연간 2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50만원) 을 한도로"로, "한도액 등은"을 "한도액의 산정기간 등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1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제111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
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한 특례) ①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	
의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	
형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자가 <u>2021년 12월 31</u>	
<u>일</u> 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	<u>2024년 12월 31일</u>
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서 규정	
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	
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	
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② (생략)
- ③ 제1항에 따른 <u>환급은</u> 다음 령으로 정한다.

- 1. 2. (생략)
- ④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환급은 연 각 호에 따른 세액을 환급하며, <u>간 2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u> 연간 환급 한도액 등은 대통령 <u>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50만</u> 원)을 한도로----
 - -----한도액의 산정기간 등
 - 1. 2. (현행과 같음)
 - ④ ~ ⑫ (현행과 같음)